공고 제 2018 - 3호

#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의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

※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 및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1장(3㎝×4㎝)을 지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| 우 편 물 반 송 자 | | | 발급기간 | 사 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성 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| |
| 유*민 | 2000.12.10 | 상현로 119-6 | 2018.1.1~<br>2018.12.31. | 폐문부재 |
| 곽*현 | 2000.12.18 | 광교마을로 62 | 2018.1.1~<br>2018.12.31. | 폐문부재 |
| 이*지 | 2000.12.23 | 심곡로 11 | 2018.1.1~<br>2018.12.31. | 폐문부재 |

2018년 1월 10일

상 현 1 동 장